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 **수원지방검찰청** 수원지검 전문공보관 윤철민 전화 031-5182-4290 / 팩스 031-5182-4555	**보 도 자 료** **2022. 5. 25.(수)**

제 목	**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 수사결과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개금지정보 (제11조 제2항 제3호)

※ 2022. 5. 24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·산업기술범죄형사부(부장검사 이춘)는 세계 최고 기술력의 **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 A회사의 세정장비 첨단기술 국외유출 사건을 수사**한 결과,

  – A회사 前연구원들이 퇴사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뒤, A회사 및 협력사 직원들로부터 다량의 A회사 기술정보를 무단취득하거나 A회사의 기술정보가 담긴 부품 자체를 제공받아 **A회사와 동일한 스펙의 설비를 생산하여 국외로 수출하면서, 도면 등 기술정보까지 국외로 유출**한 사실을 밝혀내어, **A회사 前연구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0명을 기소**함

-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원,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, 전문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음

Ⅰ 주요 사건관계인

- 피고인들
  - ㄱOO [46세, 구속, BOO㈜ 대표이사] 등 9명
  - BOO 주식회사 [ㄱOO이 설립한 법인(이하 'B회사')]

※ 상세 피고인별 혐의사실 요지는 별첨 참조

- 피해자 : AOO 주식회사(이하 'A회사')

※ A회사는 고온의 황산약액을 사용한 세정장비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,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등,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임

Ⅱ 주요 공소사실의 요지

- **A회사의 기술정보 부정사용 범행**
  - 2018. 3.~2021. 12.경 부정하게 유출한 A회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해 동일한 스펙의 반도체 세정장비 **14대를 제작한 뒤, 기술과 함께 국외 유출하여 미화 59,822,151달러(약 710억 원)를 취득** 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, 산업기술보호법위반]

- **A회사의 기술정보 부정취득, 부정누설, 부정유출 범행**
  - 2017. 8.~2021. 10.경 A회사 또는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설계도면, 부품리스트 등 **A회사의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(누설)**하거나, 재직 중 취득하여 보관한 **A회사 기술정보를 부정 유출** 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, 산업기술보호법위반, 업무상배임]

- **증거인멸 범행**
  - 2021. 10.~11.경 B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**하드디스크,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인멸** [증거인멸, 증거인멸교사]

Ⅲ 주요 수사 경과

- ’21. 5. 대검 첩보(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) 접수
- ’21. 10. ~ 11. 피고인들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’22. 1. ~ 5. 총 7명 피고인 구속영장 순차 발부
- ’22. 5. 25. 주범 ㄱOO 등 구속기소

Ⅳ 수사 결과

- **반도체 생산 수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세정장비 제작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고, 위 기술정보는 A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임**

  - A회사는 황산을 포함한 고온의 약액을 사용해 미세패턴 세정코팅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(BOO)와 웨이퍼 이송로봇의 팔을 2개에서 4개로 늘려 세정속도를 높이는 장비(LOO) 부분에서 기술력을 선도

<BOO>

<LOO>

➜ **‘반도체 세정장비’**는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조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**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**로서, 세정과정에서 발생하는 **반도체 수율 불량을 줄이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**

  - 피고인들은 A회사의 BOO 장비와 LOO 장비를 모방대상으로 삼아, 설계도면, 부품리스트, 약액배관정보, 소프트웨어, 작업표준서 등 거의 모든 부분의 기술정보를 집중적으로 유출

- B회사가 수출한 장비와 A회사 장비의 동일성을 분석한 결과, 유사한 정도를 넘어 형상과 치수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

▣ **기술자료 유출로 인한 피해액 규모**

- 피고인들은 3년('19. 12.~'21. 12.) 동안 14대의 세정장비 및 기술 유출 대가로 **미화 59,822,151달러(약 710억 원)** 취득
- A회사는 그 동안 관련 기술개발 연구비(인건비 포함) 등 **약 2,188억 원 투자**, 최소 같은 금액 이상의 직접 손해 발생
- 나아가 A회사의 기술경쟁력 저하로 인해 주요 거래처 수주가 10%만 감소하여도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손해 발생 우려

※ 반도체 설비분야의 기술경쟁력 약화는 모회사의 반도체 생산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바, 반도체산업 전반에 걸쳐 수조원 이상의 피해 발생

● **A회사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내세우며 관련 기술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다면서 먼저 투자를 받고,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맞춤형 장비 및 기술정보를 해외로 유출**

- 피고인들은 세정장비 제작을 위한 인력, 자금, 기술력이 없었음에도 A회사의 고온 황산약액 세정장비와 동일 스펙 장비를 1~2년 안에 제작할 수 있음(통상 4~5년 소요)을 내세우며 외국 투자자를 모집
- 세정장비 종류별로 1~2기씩 해외로 수출하고, 최종 수입처가 외국의 국영 반도체연구소인 점, 수출가격이 통상가격의 3배가량인 점 등에 비추어, 세정장비별 '기술정보 판매목적'이 뚜렷

● **외국 내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기술이전 계획**

- 피고인들은 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A회사 관련 기술을 모두 이전시키고, 그 대가로 합작법인 지분 20% 취득 계획

※ 지분 1%에 대한 최소 기대수익으로 미화 750,000달러를 책정하고, 범행 기여도에 따라 지분 분배비율 결정

A회사의 협력사 매수 및 관련 증거 인멸

- 피고인들은 A회사에 부품을 제작·납품하는 협력사까지 포섭하여, A회사의 기술정보가 집약된 A회사 전용 부품을 취득 및 사용

- 수사개시 후 협력사까지 동원하여 관련 증거자료 인멸하기도 함

※ 증거인멸을 직접 실행한 협력사 대표 등 2명 구속기소('22. 4. 21.)

[별첨 :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]

순번	피고인	직책	공소사실/죄명	처분
1	ㄱ○○	A회사 前 직원 (BOO㈜ 설립)	① '17. 8. 30. 차세대 세정장비 챔버부 도면을 부정취득하려다 미수 ② '17. 10. 16. 이송로봇 도면파일 등을 부정취득 ③ '19. 5. 15. 이송로봇 부품리스트 등을 부정취득 ④ 공모하여 '21. 12.까지 A회사 기술을 부정사용하여 세정장비 제작 및 기술과 함께 해외 유출 **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 등), 산업기술보호법위반]**	'22. 5. 25. 구속기소
2	ㄴ○○	A회사 前 연구원 (BOO㈜ 이직)	① '18. 10.경 A회사를 퇴사하면서 작업표준서 등을 반납하지 않고 유출 ② 공모하여 '21. 12.까지 A회사 기술을 부정사용하여 세정장비 제작 및 기술과 함께 해외 유출 **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 등), 산업기술보호법위반, 업무상배임]**	'22. 5. 25. 구속기소
3	ㄷ○○	A회사 前 연구원 (BOO㈜ 이직)	① '19. 6. 20. 유기세정장비 약액정보 등을 부정취득 ② '20. 3. 14. 스핀척 검사성적서(7종) 파일을 부정취득 ③ '21. 10. 6. 진공척 설계도면 파일을 부정취득 ④ 공모하여 '21. 12.까지 A회사 기술을 부정사용하여 세정장비 제작 및 기술과 함께 해외 유출 **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 등), 산업기술보호법위반]**	'22. 5. 25. 구속기소
4	ㄹ○○	A회사 前 연구원 (BOO㈜ 이직)	① '19. 5. 15. 이송로봇 부품리스트 등을 부정취득 ② '19. 5.~'20. 2.경 ①에서 취득한 이송로봇 기술정보 등을 로봇제작 협력업체에 제공 ③ 공모하여 '21. 12.까지 A회사 기술을 부정사용하여 세정장비 제작 및 기술과 함께 해외 유출 **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 등), 산업기술보호법위반]**	①, ② '22. 1. 14. 구속기소 ③ '22. 5. 25. 추가기소
5	ㅁ○○	A회사 前 연구원 (BOO㈜ 이직)	① '19. 2.경 차세대 세정장비 히터 세팅값 기술정보를 부정취득 ② '19. 1.~2.경 A회사를 퇴사하면서 차세대 세정장비 인터락 정보를 반납하지 않고 유출	①~③ '22. 1. 14. 구속기소

			③ ‘19. 1.~’20. 2.경 ①,②에서 취득(유출)한 A회사 기술정보를 전기장치 관련 협력업체에 제공 ④ 공모하여 ‘21. 12.까지 A회사 기술을 부정사용하여 세정장비 제작 및 기술과 함께 해외 유출 **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 등), 산업기술보호법위반, 업무상배임]**	④ ‘22. 5. 25. 추가기소
6	ㅂ○○	A회사 협력사 대표	① ‘19. 9. 6. ㄱOO의 부탁으로 A회사 기술정보를 부정사용해 스핀척 12개 부정제작 및 B회사에 매도 ② ‘21. 10. 29. ㅅOO으로 하여금 회사 PC하드디스크 및 직원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을 지시 **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 등), 산업기술보호법위반, 증거인멸교사]**	‘22. 4. 21. 구속기소
7	ㅅ○○	A회사 협력사 직원	ㅂOO의 지시를 받아 ‘21. 10. 29.경 회사PC 하드디스크,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하고, 직원들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 **[증거인멸, 증거인멸교사]**	‘22. 4. 21. 구속기소
8	ㅇ○○	A회사 前 연구원 (BOO㈜ 이직)	① ‘19. 6. 20. ㄷOO에게 A회사 세정장비 약액정보를 부정누설 ② ‘19. 8.~’21. 3.경 7회에 걸쳐 A회사 세정장비 관련 기술정보를 부정취득 ③ 공모하여 ‘21. 12.까지 A회사 기술을 부정사용하여 세정장비 제작 및 기술과 함께 해외 유출 **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 등), 산업기술보호법위반]**	‘22. 5. 25. 불구속기소
9	ㅈ○○	A회사 前 연구원 (SOO㈜ 이직)	① ‘19. 1.경 A회사를 퇴사하면서 약액공급장치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반납하지 않고 유출 ② 공모하여 ‘21. 12.까지 A회사 기술을 부정사용하여 세정장비 제작 및 기술과 함께 해외 유출 **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 등), 산업기술보호법위반]**	‘22. 5. 25. 불구속기소